



제42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김예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573호)

2025. 2.

정 무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명호



## 목 차

|                                        |   |
|----------------------------------------|---|
| I . 제안경위 .....                         | 1 |
|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 1 |
| III . 검토의견: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 2 |



##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예지의원 등 13인
2. 제 안 일 : 2024. 10. 4.
3. 회 부 일 : 2024. 10. 7.

##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충분한 양육을 받기 어려워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 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다가 18세 이후 보호종료된 청년인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청년보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에 대해서는 고용·금융 부문 등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명시적인 지원 근거가 없음.

이에 현행법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 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5호의2·제4조제6항 및 제8조제3항 등).

### Ⅲ. 검토의견: 자립준비 청년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

□ 개정안은 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에 ‘취약계층 청년’ 외에 ‘자립준비 청년’에 대해서도 별도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②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고용 및 금융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3항, 제1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br>1. ~ 5. (생략)<br><u>&lt;신설&gt;</u><br><br>6.·7. (생략)                       | 제3조(정의) -----<br>-----.<br>1. ~ 5. (현행과 같음)<br>5의2. “자립준비 청년”이란 「아동복지법」 제16조 <sup>1)</sup> 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퇴소조치된 청년(제1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18세인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생략)<br>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정책을 수립·실시하는 경우 <u>취약계층 청년</u> 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br>⑥ -----<br>----- <u>취약계층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u> (이하 “취약계층 청년등”이라 한다)-----<br>-----.                                     |
|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생략)<br>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u>청년</u> 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br>③ ----- <u>청년등</u> -----<br>-----.                                                                                   |

|                                                                      |                                        |
|----------------------------------------------------------------------|----------------------------------------|
| ④ · ⑤ (생 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
|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생 략)                                    |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취약계층 청년</u> 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br><u>청년등의</u> -----<br>-----. |
|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생 략)                                             |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① (현행과 같음)            |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u>취약계층 청년</u> 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br><u>청년등의</u> -----<br>-----. |

□ 현행법은 ‘취약계층 청년’을 ‘고용 · 교육 ·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으로 정의하고,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시에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촉진 및 금융생활 지원 등을 위한 대책도 마련하도록 규정<sup>2)</sup>하고 있지만, ‘자립준비 청년<sup>3)</sup>’ 지원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1) 「아동복지법」 제16조(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 등) ① 제15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가정위탁, 아동복지시설, 전문치료기관)의 보호조치 중인 보호대상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였거나, 보호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되면 해당 시 · 도지사,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그 보호 중인 아동의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시켜야 한다.
- 2) 「청년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 · 교육 · 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 ③ 기본계획에는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 제17조(청년 고용촉진 및 일자리의 질 향상)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취약계층 청년의 채무여건 개선 및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3) 아동양육시설,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자립이 필요한 청년. 해당 청년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25세까지 연장 가능(「아동복지법」 제16조, 제16조의3)

□ 개정안은 자립준비 청년 지원과 관련하여 명시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반 청년에 비해 자립준비 청년은 가정에서 적절한 돌봄과 경제적인 지원을 받기 어려워 국가 등의 지원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다만, 현행법은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취약계층 청년’이라 하여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고용 및 금융생활 지원 등을 이미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자립준비 청년’을 동법에 규정하여 지원 대상 청년을 열거적으로 기술하는 것은 기본법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청년기본법」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참고로, 현행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sup>4)</sup>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이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sup>5)</sup>에는

- 
- 4) 「청년기본법」 제8조(청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국무총리는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2. 청년정책의 추진목표  
3. 청년정책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4.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  
5. 청년정책에 관한 기능의 조정  
6.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  
7.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5) 「청년기본법」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 시행계획 및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무총리는 제출된 시행계획을 점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청년 지원사업으로서 자립준비 청년, 학교 밖 청년, 가족돌봄 청년, 장애 청년 등에 대한 지원내용이 이미 포함되어 있음.<sup>6)</sup>

□ 국무조정실 역시 현행 「청년기본법」에 특수한 유형의 청년인 ‘자립준비 청년’만을 별도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 또한,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청년을 자립준비 청년 등으로 세분화하여 규정하려는 취지라면, 「청년기본법」보다는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는 의견임.

|              |
|--------------|
| 문 의 처        |
| 02)6788-5113 |

---

6) 상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참조

**【참고자료】**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 및 2024년 청년정책 시행계획 中  
‘청년 취약계층 지원’ 사업내용**

| 지원사항                         | 내용                                                                                                                                                            |
|------------------------------|---------------------------------------------------------------------------------------------------------------------------------------------------------------|
|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지원                | <b>(자립준비 청년)</b><br>- 자립수당 인상(2023년 40만원 → 2024년 50만원) 및 지급대상 확대<br>- 자립지원전담기관 전담인력 확충, 개인별 맞춤형 사례 관리 지원 확대                                                   |
| 가족돌봄청년 및 고립·은둔 청년 발굴·지원체계 구축 | <b>(가족돌봄 청년)</b><br>- 가족돌봄청년 지원 시범사업 지자체 선정, 전담기관 지정, 자기돌봄비 지급 등 발굴·지원체계 구축 추진<br><b>(고립·은둔 청년)</b><br>- 고립·은둔 청년의 일상회복·사회 재진입 지원 시범사업 실시 및 고립·은둔 조기 발굴 체계 마련 |
| 청년정책 사각지대 해소                 | <b>(가정 밖 청소년)</b><br>- 자립지원수당(월 40만원) 지원 기간 연장(3년→5년)<br><b>(학교 밖 청소년)</b> 맞춤형 직업훈련 지원<br><b>(청년 한부모)</b> 추가 아동양육비 지원<br><b>(청년 1인가구)</b>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 확대 |
| 청년 장애인 지원 내실화                | <b>(청년 장애인)</b><br>- 장애대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인력 및 보조기기 지원<br>- 발달장애인 대한 창·제작 준비과정 지원                                                                                    |

(자료: 국무조정실 제공자료 재구성)